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윤승오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승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4
----------	-----

발의연월일 : 2020. 8. 14.

발 의 자 : 윤승오 · 이종열 · 배진석
방유봉 · 남진복 · 이철구
김상조 · 나기보 · 김하수
정근수 · 박영서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사업 수행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국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상북도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상북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노사민정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노사민정협의회위원을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 구성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노사민정협의회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5조)

- 마.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실무협의회, 간사 등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바.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지원 등 사무국 설치와 기능, 위탁,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필요시 의견청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노사민정협의회 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촉구를 규정함(안 제12조)
- 자.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관계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등에 수당과 여비 지급을 규정함(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 붙임
- 나.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라. 해당부서 의견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 붙임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상북도가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자, 주민 및 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 담당 실·국·본부장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단체의 대표자(노동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의 대표자(사용자 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대행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위촉되는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 처리
2. 협의회의 기능 보좌
3. 노사분규 예상 기업체 사전방문 후 교육 및 대화
4. 노사분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중재 역할
5. 노사민정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조체계 유지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도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관계 행정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주관은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의결로 주관기관을 정하며, 첫 회의는 도가 주관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노사민정 등과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등 운영 지원
 2.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3.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4. 노사 협력 증진 및 노사관계 안정 사업
 5. 노동 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6.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연구 의뢰
 7.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8. 고용노동부 국비매칭 펀드 사업
 9. 그 밖의 홈페이지 구축 및 예산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④ 도지사는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도내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기업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협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촉구)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관계 전문가,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결정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행한 결정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건
법무혁신담당관	안 제1조	<문장 및 띄어쓰기 수정 필요> -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관할지역의 => 관할 지역의 - 사회안정을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안 제2조	<문장 및 띄어쓰기 수정 필요> - 관할지역의 => 관할 지역의 -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경상북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 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안 제3조	
	- 제2항	<문장 수정 필요> -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 협의회는
	· 제9호	<띄어쓰기 수정 필요> - 지역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 제4조	
	- 제3항	<문장 수정 필요> - 위촉한다 =>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건
	- 제4항	<문장 및 띄어쓰기 수정 필요> - 노동단체의 대표자(노동단체의 경상북도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 노동단체의 대표자(노동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 (사용자 단체의 경상북도 대표자를 말한다) => (사용자 단체의 도 대표자를 말한다) ※ 안 제9조제3항제2호에서는 “사용자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 단체”의 띄어쓰기 통일 필요
	안 제5조	
	- 제1항	<문장 수정 필요> - 당해 직위의 => 해당 직위의
	- 제2항	<문장 수정 검토 필요> - 수행하여 => 수행하며 ※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의 의미가 모호함
	안 제6조	- 위촉직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일반 조례인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는 바, 삭제 검토 필요
	· 제1호	<문장 수정 필요> - 기타의 사유 => 그 밖의 사유
	· 제3호 및 제4호	<문장 수정 필요> - 위원회 => 협의회
	안 제9조	
	- 제1항제5호	- 누구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할지 재검토 필요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건
	- 제4항	- 각 호의 표현 형식은 원칙적으로 명사구의 형식이며, 제3호의 경우 실무담당자 회의에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면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예시안을 마련함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주관은 사안에 따라 실무협의회 의결로 주관기관을 정하고, 첫 회의는 도가 주관한다.
	안 제10조 - 제1항 - 제3항	<문장 수정 필요> - 1인 => 1명 - 제3항, 제11조제1항 · 제3항은 “협의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협의회”도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필요
	안 제11조 - 제1항	- 각 호의 사무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라고 하였으므로 협의회 사무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제1호 및 제9호는 사무국의 사무를 규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생각됨 - 협의회 사무를 규정하려면,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제11조가 아닌 별도의 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에 맞음 - 협의회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인데, 제1항제2호부터 제8호의 사업 중 고용노동부 국비매칭 펀드 사업 등은 협의회 사무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제4항	<띄어쓰기 수정 필요> - 위탁 할 수 있다 => 위탁할 수 있다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건
	안 제12조 - 제2항 안 제14조 - 제1항 - 제2항 안 부칙 - 제2조 - 제3조 - 제4조	<문장 수정 필요> - 협의회과 실무협의회 =>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문장 수정 필요> - 협의회 실무협의회 =>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문장 수정 필요> - 세미나에 참여하는 =>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 소용경비 => 소요경비 <문장 수정 필요> - 시행 이전의 종전 조례에 =>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문장 수정 필요> - 시행 이전의 종전 조례에 =>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띄어쓰기 수정 필요> - 임명일부터 => 임명일부터 <문장 수정 필요> - 시행 이전의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결정은 =>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은
	[작성 형식 관련] 공통사항 개정지시문 안 제3조제2항제9호, 제9조제3항제4호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316참조> - 자간 0% - 내어쓰기 하지 않음. - 내어쓰기 기준 적용

2 규제심사 (법무혁신담당관)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황 지 훈
입안주무부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20. 7. 13.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일자리경제노동과)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일자리경제노동과		의견 없음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위 조례안 제11조에서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고,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11조)
-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운영 및 회의 출석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사무국장 및 직원 채용과 위탁사업은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노사민정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지급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90,000
사무국 설치·운영비	인건비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75,000
	운영비	여비, 공공요금, 기타 수용비	6,000
위원회 참석수당	노사민정협의회	100,000원×15명×3회	4,500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100,000원×15명×3회	4,500

※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비 : 포항, 구미 2개소 연간 소요액 기준으로 평균 산출액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100,000원(기본) : '20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운영 지침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노동과 노동정책팀 지방공업주사 이준희(054-880-2686)



경 상 북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외 2건)**

1. 관련 : 정책기획관-7404(2020.7.12.)호, 어르신복지과-8030(2020.7.13.)호, 일자리경제노동과-6914(2020.7.14.)호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 명	검 토 의 건
경상북도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 한 의 결 조 례 안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경상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등에 따라 연구용역비 등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 부 개 정 조 례 안	◦ 본 조례안은 제9조(실무협의회),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에 따라 사무국 설치·운영비 등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끝.

예 산 담 당 시 관 청 찬

수신자 정책기획관, 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주무관 이근호 재정지원팀장 이상현 예산담당관 서정찬 전결 2020. 7. 16.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9091 (2020. 7. 16.) 접수 어르신복지과-8201 (2020. 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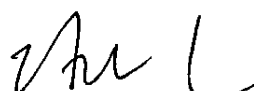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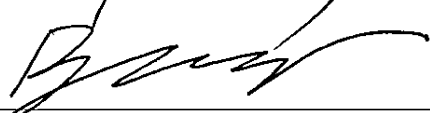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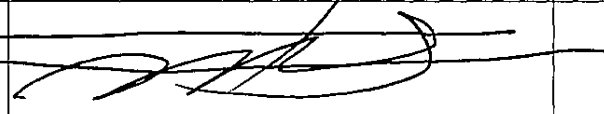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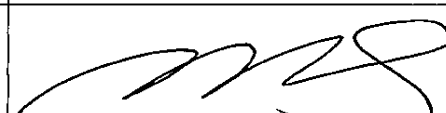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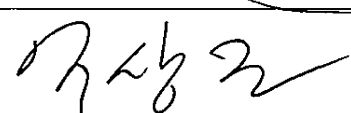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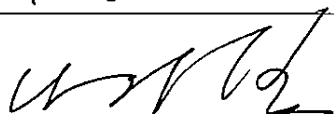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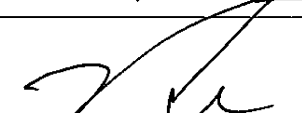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soyiumul@korea.kr / 비공개(5)

"생활 속 거리두기, 거리를 두면 안전이 보입니다."

발의의원 서명명부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유 경 이		
이 종 열		
배 진 석		
박 옥 봉		
신 권 옥		
윤 승 오		
이 철 구		
김 상 조		
나 기 본		
권 하 우		
장 천 석		
박 영 석	